

13. 國會 통과 法案 主要 內容

자료제공 : 국회의안과

1. 행정부문

□ 행정규제기본법(제정)

- 시행일 :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날
- 주요내용
 -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
 - 규제개혁위에 규제의 등록 의무화
 - 행정기관은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 도입의 타당성 심사
 - 행정규제의 신설·강화시 법령등에 5년이내의 규제 존속기간을 설정(규제일몰제 도입)

2. 금융부문

□ 한국주택은행법(폐지)

- 시행일 : 공포한 날로부터
- 주요내용
 - 동법을 폐지하고 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설립함
 - 현재 발행된 주택채권의 상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
 - 민영화 이후에도 주택금융 취급비율을 정관에 규정하여 일정수준의 주택금융 공급기능을 유지토록 함

-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및 주택건설촉진법 중에서 인용한 한국주택은행은 민영화 이후에도 관련업무의 계속성 유지

3. 재정부문

□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유치촉진법(개정)

- 시행일 :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
- 주요내용
 - 민간유치 제1종시설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사업시행자 및 금융기관이 사회간접 자본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

□ 지방세법(개정)

- 시행일 : '97. 10. 1일부터
- 주요내용
 - 시·군세에 대한 불복절차 간소화
3심제도(처분청 → 도 → 내무부) → 2심제도(처분청 → 도 또는 내무부)
 - 지방세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연장
농어민 등 서민생활의 안정,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
97년말 → 2000년까지로 적용시한 연장

4. 건설교통부문

□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(개정)

- 시행일 : 공포한 날로부터
- 주요내용
 - 건교통장관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와 토지시장의 수급조절을 위해 토지를 매입

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하고 이 업무를 한국토지공사에 위탁

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(개정)

○ 시행일 : 공포한 날로부터

○ 주요내용

- 개발제한구역의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하

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: 개발이익의 50% → 개발이익의 20% 부담을 완화

- 개발부담금 정산제도 폐지

개발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, 부과 토록하고 현행의 다음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정산하는 제도 폐지

□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(개정)

○ 시행일 : 공포한 날로부터

○ 주요내용

- 택지취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토지거래계약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

- 가구별소유상한을 초과하는 주택이 건축된 택지를 소유한자가 5년간 부담금을 부과받은 경우 당해 택지를 부과대상에서 제외

주택회보